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가 2017.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83,687,130원의 부과처분 중 14,229,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7,071,440원의 부과처분 중 1,20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83,687,130원의 부과처분 중 10,43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7,071,440원의 부과처분 중 96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B,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3. [redacted]시 F 공장용지 6,612.3㎡ 및 그 지상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5. 8. 7.부터 2016. 10.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들 등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2015. 8. 7. (증자)	2015. 10. 12. (매매)	2015. 10. 14. (증자)	2015. 11. 24. (증자)	2016. 9. 8. (매매)	2016. 10. 24. (매매)
총 발행 주식 수	60,000 (100%)	60,000 (100%)	100,000 (100%)	180,001 (100%)	180,001 (100%)	180,001 (100%)
G	12,000	- (-12,000)	-	-	-	-
H	15,000	- (-15,000)	-	-	-	-
I	33,000	60,000 (+27,000)	60,000	64,001 (+4,001)	28,001 (-36,000)	28,001
J	-	-	-	20,000 (+20,000)	20,000	- (-20,000)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7. 9.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은 2017. 9. 11.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K	-	-	-	6,000 (+6,000)	6,000	6,000
원고 A	-	-	20,000 (+20,000)	36,000 (+16,000)	36,000	36,000
원고 B	-	-	10,000 (+10,000)	18,000 (+8,000)	18,000	38,000 (+20,000)
원고 D	-	-	10,000 (+10,000)	36,000 (+26,000)	36,000	36,000
원고 C	-	-	-	-	36,000 (+36,000)	36,000
원고들 합계	-	-	40,000 (40.00%)	90,000 (50.00%)	126,000 (70.00%)	146,000 (81.11%)

라.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C이 2016. 9. 8. I로부터 36,000주, 원고 B가 2016. 10. 24. J로부터 20,000주를 각각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총 주식비율이 81.11%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7. 9.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3,998,472,222원의 81.11%에 해당하는 3,243,160,8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3,687,130원, 농어촌특별세 7,071,440원의 합계 90,75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5. [redacted]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2, 3, 10,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5. 11.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I로부터 위 회사 주식 31,00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이를 I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며, 위 주식 양도대금으로 합계 155,005,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71,001주를 보유함으로써 총 주식비율이 약 71%에 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이 가지는 총 주식비율 81.11%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 중 원고들의 주식 증가분을 제외한 주식비율 71%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5, 7, 8, 17호증, 을 제9, 1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2015. 1. 1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5. 10. 13.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 A은 2015. 10. 13., 원고 B, D은 2015. 11. 20. 각각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7., 2015. 10. 14., 2015. 11. 24. 총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발행주식당 5,000원)을 순차로 증자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위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았다.

3) 원고 A은 I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1주당 양도가액은 '5,000원', 총 양도가액은 '155,005,000원', 작성일자는 '2015. 11. 14.'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 말미에는 양도인 I와 양수인 원고 A의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1. 계약일 현재 갑(I) 보유 주식 27,000주 및 11. 23. 유상증자 주식 4,001주, 합계 31,001주를 매매
2. 양도계약금 5,005,000원은 11. 14.(토) 현금 지급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11. 16. 매도인 I 계좌로 입금
3. 잔금을 11. 16.까지 미지급 시는 동 계약은 자동 해지

4) 원고 A과 I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 계약서(柱式名義信託代金 支給 契約書)'(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자는 '2015. 11. 14.'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말미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동일한 인영의 원고 A과 I의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지급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계약 내용**

○ 2015. 11. 14. 을(명의수탁자, I)은 갑(명의신탁자, 원고 A)에게 병(명의신탁주식, 이 사건 주식) 27,000주를 양도한다.

○ 2015. 11. 23. 유상증자 시 을이 취득 예정인 병 4,001주도 갑에게 양도한다.

○ 상기 양도대금 지급은 2015. 11. 14. 계약 시 5,005,000원(공휴일 관계로 현금 지급)을 지급하고, 차액 150,000,000원은 2015. 11. 16. 갑은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 주식명의신탁대금 지급계약 특약

○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사람의 은행계좌로 병 매매잔금 150,000,000원을 2015. 11. 16.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할 경우에 상기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을에게 자동 귀속된다.

○ 갑과 을은 병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목적으로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 추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시에 을은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병 소유에 대한 명의환원 요청 시에 을은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분쟁에 대한 소송관할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5) 원고 A과 I는 '주식명의신탁 계약서(柱式名義信託 契約書)'(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자는 '2015. 11. 23.'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말미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지급계약서와 동일한 인영의 원고 A과 I의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갑(명의신탁자, 원고 A)은 을(명의수탁자, I)에게 병(명의신탁주식 발행회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계약하며,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는 을이나, 실질 소유주는 갑임을 확인 증빙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음

-명의신탁 주식 내역

[주식 종류: 비상장주식, 보통주 단위: 원]

명의신탁일	1주당 액면가	신탁 주식 수	비고
2015년 11월 14일	5,000	27,000주	붙임 주식명의신탁 대금지급계약서 참조
2015년 11월 23일	5,000	4,001주	
합 계		31,001주	

(2조) 명의신탁한 상기의 병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다. 병이 주권을 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행하는 경우, 을은 동 발행주권을 갑에게 명의신탁환원으로 해서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조) 병의 주주총회에는 갑이 실질주주로 참석한다. 을은 병 또는 명의대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을 갑에게 재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주주총회대리인 참석위임장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조) 을은 명의수탁 받은 상기 병 주식에 대하여,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주식의 양도, 질권 설정, 담보 제공, 신탁 등을 계약할 수 없으며, 을이 임의로 계약한 상기의 행위는 원인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을은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 및 보상을 실시한다.
(5조) 명의신탁한 병 주식에 대하여 갑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명의신탁환원에 의거 즉시 원소유자인 갑에게 반환하고, 병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실소유자인 갑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6조) 분쟁에 대한 소송관할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6) 원고 A은 2014. 11. 13. L 주식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음 해인 2015. 11. 13. 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449,651,218원을 자신의 [redacted]증권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원고 A은 2015. 11. 13. 위 [redacted]증권 계좌에서 4,000,000원, 2015. 11. 16. [redacted]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5. 11. 16. 위 [redacted]증권 계좌에서 I의 [redacted]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판 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이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은 2015. 11. 14. I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위 주식을 I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경우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과 I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 이 사건 지급계약서 및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만 한다)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하고 있고, 위 각 계약서를 보면 원고 A이 I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001주를 155,005,000원에 양수하되, 위 주식을 I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달리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을 찾아볼 수 없다.

나) 2015. 11. 14.자로 작성된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지급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양도 목적물, 양도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기재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등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지급계약서 중 '주식 명의신탁대금 지급계약 특약' 부분을 보면 "갑(원고 A)과 을(I)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목적으로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내용에 따라 2015. 11. 23.자로 원고 A과 I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지급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2015. 11. 14. 계약금 5,00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5. 11. 16. 나머지 잔금 150,000,000원을 I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2015. 11. 13. 자신의 [redacted]증권 계좌에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5. 11. 16. I의 [redacted]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 당시 원고 A으로부터 5,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은 위 각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라)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원고 A과 I의 인감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었고,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모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세무사 M도 '세무법인 N [redacted]지점 사무소에서 원고 A 및 I와 함께 2015. 11. 14.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지급계약서를, 2015. 11. 23.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신탁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7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제1호)나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제3호)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반면(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과 그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바, 일반적인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신탁법상 대항요건을 검토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바) 피고는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대한 공증의 유무에 따라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 등에 공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재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 결

따라서 원고 A이 2015. 11. 14. I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5. 12. 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총 주식비율이 별지 2 원고들의 보유주식 변동 상황 표 중 '실제'란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5. 12. 3. 이전에는 67.22%이었다가 위 부동산의 취득 후 81.11%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취득한 주식의 증가분 13.89%(= 81.11% - 67.22%)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위 증가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면 취득세는 14,229,710원, 농어촌특별세는 1,200,8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정신구

판사 공두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별지 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17

별지 2

원고들의 보유주식 변동 상황 표

(단위 : 주, %)

구분	관계	2015. 10. 13. 증자		2015. 11. 16. 매매 취득 후 명의신탁		2015. 11. 23. 증자		2016. 9. 8. 주식환원 등		2016. 10. 24. 양수도	
		주주명부	실제	주주명부	실제	주주명부	실제	주주명부	실제	주주명부	실제
	실사주	20,000 (20%)	20,000 (20%)	20,000 (20%)	47,000 (47%)	36,000 (20%)	67,001 (37.22%)	36,000 (20%)	36,000 (20%)	36,000 (20%)	36,000 (20%)
	처	10,000 (10%)	10,000 (10%)	10,000 (10%)	10,000 (10%)	18,000 (10%)	18,000 (10%)	18,000 (10%)	18,000 (10%)	38,000 (21.11%)	38,000 (21.11%)
	자	10,000 (10%)	10,000 (10%)	10,000 (10%)	10,000 (10%)	36,000 (20%)	36,000 (20%)	36,000 (20%)	36,000 (20%)	36,000 (20%)	36,000 (20%)
	자							36,000 (20%)	36,000 (20%)	36,000 (20%)	36,000 (20%)
원고들 지분		40%	40%	40%	67%	50%	67.22%	70%	70%	81.11%	81.11%
총발행주식수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80,001	180,001	180,001	180,001	180,001	180,001